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 안 번 호 | 654 |
|------------|-----|

2023년 4월 25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이병도 의원 외 12명
2.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환경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생의 만족도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을 규정(안 제15조의2).

- 현장실습생의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제3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이병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654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뜻하며, 서울시 관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올해 졸업생 기준으로 3,268명입니다.

[표] 서울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황

(단위: 명)

| 졸업연도 | 졸업생 | 참여 학생 | 참여율 |
|-------|--------|-------|-------|
| 2021년 | 13,193 | 4,153 | 31.5% |
| 2022년 | 13,097 | 4,562 | 34.8% |
| 2023년 | 12,103 | 3,268 | 27.0% |

- 이러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현장실습 산업체의 노동 환경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¹⁾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12월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지원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안 제15조의2)에 대한 검토

- 먼저 안 제15조의2제1항은 현장실습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3항에서는 현장실습산업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자료: 현장실습 폐지가 답? 학생들은 '진짜 현장실습'을 원한다(경향신문, 2021.10.18.)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0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고,²⁾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작업중지권 등의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³⁾

○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에 따르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⁴⁾

안 제15조의2가 상위법을 반영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13명, 노무사 11명으로 구성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단’을 운영하며 현장실습 지도·점검과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 및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안 제15조의2에서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교육청의 현장실습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

2)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3)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4)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료됩니다.

다. 현장실습의 평가(안 제16조제3항)에 대한 검토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학교장이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2 직업계고 현장실습 공통매뉴얼(교육부)’을 살펴보면, 학교는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학생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현장실습 운영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평가보고회를 진행해야 하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를 최종 심의 및 의결한 후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바, 안 제16조제3항은 이러한 교육부의 매뉴얼을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353, 2023. 4. 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① 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15조의2(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u></p> <p>① <u>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현장실습산업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 <p>제16조(현장실습의 평가) ①·② (생략)</p> <p><u><신 설></u></p> | <p>제16조(현장실습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p> |